株式會社 네슈라航運
NESURA EXPRESS CO., LTD.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16 메디힐빌딩 6층
6F Mediheal Bldg., 516 Gonghang-daero, Gangseo-gu, Seoul, Korea
TEL 82-2-2654-8801 · FAX 82-2-2654-6729

윤 리 강 령

1. 우리는 근면과 성실한 자세로서 봉사정신을 드높인다.
2. 우리는 건전한 수출입 업무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다.
3. 우리는 직원 상호간의 인화 단결과 품위를 유지함으로써 직업 윤리를 배양하고, 명랑한 사회 풍토를 조성한다.

윤 리 강 령 세 부 지 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정방지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2조 "직원윤리강령"에 대한 세부실천사항을 정하여 수출입 관련 직무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공고히 하고 청렴한 업무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준수) 임직원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수출입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며, 당사 규정 및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성실 ·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품위유지)

① 임직원은 공 · 사를 불문하고 품위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들의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들은 다른 임직원들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임직원들은 회사 내 직원간 학연, 지연, 혈연 등 파벌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직무에 관한 윤리

제4조(부당경쟁 금지) 임직원들은 수출입 업무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유치에 대한 대가 또는 성과급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금품수수행위 등의 금지)

① 임직원들은 화주, 기타 다른 사람에게 정당한 보수 이외의 금품을 청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들은 관련공무원에게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16 메디힐빌딩 6층
6F Mediheal Bldg., 516 Gonghang-daero, Gangseo-gu, Seoul, Korea
TEL 82-2-2654-8801 · FAX 82-2-2654-6729

제6조(알선수수료 제의 금지) 임직원들은 업무를 유치 · 유인하기 위하여 수출입업체 또는 이를 주선하는 자, 기타 중개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제의하거나 통상보수료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개 · 알선의 대가로 이들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을 제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신속, 정확한 사실 보고 후 조치) 임직원은 이상사안 발생, 발견 시 차상급자에게 사실 그대로 신속하게 보고한 후 지침을 받아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이상사실을 축소, 은폐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지 않는다.

제8조(회사 내 성희롱 행위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에게 성적인 행동 등으로 성적인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행위 및 고정된 성 역할의 강요 등과 같은 일체의 성희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공정한 업무처리 및 협력회사 존중)

① 임직원은 협력회사 선정에 있어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해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하게 협력회사를 관리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협력회사와 접촉할 때 친절하고 공손한 태도로 대하여야 한다.

제10조(투명거래와 상호발전을 위한 거래처와의 공동노력) 임직원은 협력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 있는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하고 깨끗한 상거래와 상호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